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 5.27. 시행)됨에 따라,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교환하려는 경우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19.12.19)의 후속대책으로 항공기의 도입·처분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행정절차·기간을 간소화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비용·소요시간 등을 절감하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신고로 완화하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03.12. ~ 04.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발 10분 전까지로 한다) 지방항공청장에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항공기의 도입·처분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변경(국내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변경 예정일 7일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 다만, 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발 10분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9호의 사항 : 변경 예정일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운항시각 교환의 인가신청)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교환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운항시각교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환하고자 하는 운항시각

2. 운항시각을 교환하고자 하는 이유

제61조제2항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의 경우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 수, 탑재 화물 톤 수를 고려하여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수송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정기편 운항 횟수 감편 또는 운항중단(4주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8.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

9. 항공기의 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항공기의 편명

11.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12. 제11호를 제외한 국제선운항의 임시변경(7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72조를 제73조로 하고, 제71조를 제72조로 하며,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를 각각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한다.

제71조의2를 제72조의2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이동지역 내 자연사항 보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이동지역에서 2시간 이상 기내 자연이 발생하는 경우 자연 시간, 자연원인, 승객에 대한 조치내용, 하기(下機)계획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제12호가. 및 제12호나.를 각각 제12호나. 및 제12호다.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나목 중 “법 제62조제3항”을 “법 제6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가.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28조제1항제17호”를 “법 제28조제1항제1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7호	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일부 정지 (20일)	
--	---------------	-------------------------	-------------------------	--

별표 1 제2호제12호다목 중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나.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28조제1항제18호”를 “법 제28조제1항제1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28조제1항제20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1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제7호 중 “법 제60조제7항”을 “법 제6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법 제60조제8항”을 “법 제60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란(중전의 제9호) 제10호 중 “제60조제1

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28조제1항제9호”를 “법 제59조제1항제9의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9호	사업 일부 정지 (20일)
--	------------------	-------------------------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운항시각교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교환하고자 하는 운항시각				
	운항시각을 교환하고자 하는 이유				

「항공사업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운항시각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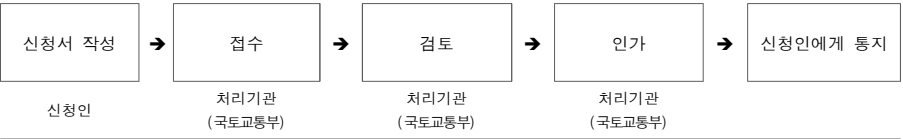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8. (생략) <신설>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항공기의 도입·처분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변경(국내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발 10분 전까지로 한다)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② ----- ----- ----- ----- ----- 다음 각호의 구분 에 따라 ----- ----- ----- ----- ----- ----- ----- -----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③ (생략)

<신설>

-----.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 다만, 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발 10분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9호의 사항 :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운항시각 교환의 인가신청)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교환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운항시각교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환하고자 하는 운항시각
2. 운항시각을 교환하고자 하는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종류별 처분내용		
		국내 및 국제 항 공운송사 업	소형항공 운송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 업
12. 소비자 보호 가.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나. 법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항공교통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7호 법 제28조제1항제18호 법 제28조제1항제19호	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일부 정지 (5일) 사업 일부 정지 (7일)	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일부 정지 (5일)	사업 일부 정지 (5일)
1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1호	면허 취소	등록 취소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7. 법 제60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에 따라 부과된 허가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7호	사업 일부 정지 (30일)
8. 법 제60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8호	사업 일부 정지 (30일)
9. 법 제60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9호	사업 일부 정지 (20일)
10. 법 제60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 서류의 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9의2호	사업 일부 정지 (7일)
11. 「항공안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않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10호	사업 일부 정지 (10일)

12. 「항공안전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필요한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않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11호	사업 일부 정지 (7일)
13. 「항공안전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12호	사업 일부 정지 (5일)
14. 「항공안전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13호	사업 일부 정지 (7일)
15. 「항공안전법」 제68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14호	사업 일부 정지 (15일)
16. 「항공안전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15호	사업 일부 정지 (15일)
17. 「항공안전법」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신지 않고 운항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16호	사업 일부 정지 (5일)
18. 「항공안전법」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법 제59조	사업

제2호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1항제17호	일부 정지 (20일)
19.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18호	사업 일부 정지 (30일)
20. 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국민에게 속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른다.	법 제59조 제1항제19호	사업 일부 정지 (180일)
21. 대한민국과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업자를 지정한 국가가 항공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이 있는 경우 그 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그 국가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협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20호	사업 일부 정지 (180일)
22.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21호	사업 일부 정지 (180일)
23. 법 제59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22호	허가 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항공산업과	
연 락 처	(044) 201-4211, 4215 (044) 201-4231